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연장 시행 알림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2435('22.2.28)호 및 -11774('21.12.17)호

2. 우리 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소독 등 추가 방역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3. 이와 관련, 관련 호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22.2.28.)되었지만, 겨울철새가 아직 북상 중이며 최근까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등 산발적 발생 위험성이 있는 상황으로 그간 운영하던 **공고 조치를 '22.3.31.까지 연장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4. 관계기관과 지자체, 관련 단체 등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해 가금농장에서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역본부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전국 가금농장에 문자 발송, 지자체는 가금농장 전담관을 통해 가금농장에 육성 등으로 전파, 단체·농협 등은 계열화사업자, 소속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 홍보 실시

붙임 1. (공고 제2022-11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검역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축산환경자원과장, 방역정책과장, 구제역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역학조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 농촌진흥청장(재해대응과장), 행정안전부장관(가축질병재난대응과장),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장),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장), 국방부장관(재난관리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보건연구과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질병대응팀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질병연구팀장), 국립생물자원관장(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장), 질병관리청장(신종감염병대응과장), 국립축산과학원장(가축질병방역과장), 경찰청장(치안상황관리관), 서울특별시장(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장(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동물위생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장, 가축유기질비료협동조합장,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주무관 **박제민** 사무관 **이재승**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전결 2022. 2. 28. **홍기성**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2437 (2022. 2. 28.) 접수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56 팩스번호 044-863-9210 / parkjemin@korea.kr / 대국민 공개